제 451 호

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

○ 기 관 명 : 김민경병리과의원

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09, 4층

○ 기관장 성명 : 김 민 경

○ 신고유형

1.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5년 10월 1일

질 병 관 리 청 장